미국 - BEAT 관련 최종 규정 발표

■ **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0년 9월 1일 세원잠식 방지세(Base Erosion and Anti-abuse Tax, 이하 BEAT)를 보완하는 최종 규정 T.D.9910을 발표함[1)]**

○ BEAT는 국외로의 세원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되었으며, 미국에서 창출한 연매출이 5억달러[2)]를 초과하고 세원잠식률[3)]이 3% 이상인 기업에 적용됨

– 공제 처리된 국외 관계사 지급금액을 다시 합산한 조정과세소득에 최소 세율 10%[4)]를 적용한 금액을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며, 이 금액이 납세자의 정규 소득세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 세액이 발생함[5)]

○ 이때 BEAT는 이론적으로 세원 이전으로 발생하는 1달러의 소득세 혜택이 100만달러[6)]의 BEAT 납세 의무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절벽효과(cliff effect)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

■ **잠재적으로 발생하는 BEAT의 절벽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국외 관련사에 지급한 비용의 공제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**

○ 공제를 전액 포기하거나 공제액을 증액하는 것은 가능하나, 공제액을 축소하거나 이미 확정한 선택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

○ 공제 여부는 매년 소득세 신고 시 새롭게 선택할 수 있음

■ **201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본 최종 규정을 완전히 적용할 수 있음**

---

1) "IRS Releases Final BEAT Waiver Regs", *Tax Notes International*, September 7, 2020, p.1394
2) 2020. 9. 23.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,823억 5천만원임
3) 해당 납세자가 소득세 산출 시 적용받은 총공제액 대비 국외 관계사에 지급한 금액을 공제받아 얻은 세금 혜택 금액
4) 2026년부터는 12.5%의 세율이 적용됨
5) Shearman & Sterling, Final Beat Deduction Wavier Regulations Provide Some Relief, https://www.shearman.com/perspectives/2020/09/final-beat-deduction-waiver-regulations-provide-some-relief
6) 2020. 9. 23.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억 6,550만원임

○ 단, 적용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후의 모든 과세연도에 대해 전체 규정을 계속 적용해야 함

<자료 수집 및 정리: 박하얀 연구원>